

법률칼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지선 변호사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로 대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이었다.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더 문제였다. 근래에는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인지, 수집한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주요하게 언급되는 문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와 헌법재판소 결정(2012. 8. 23.자 2010헌마47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 대법원 판결은 당시 국회의원 A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려면,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 중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지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시 국회의원 A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보를 받은 목적을 위반하여 공개한 것이라는 점, 공개한 행위에 따른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본인확인제', 즉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관련 법의 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실명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이 '인터넷실명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 사이의 균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글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해서 게시판 이용자가 입는 불이익과, 수사기관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 관련 정보가 그 보관 목적을 벗어나 사용될 수 있는 우려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 역시 중대하다고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2) 익명 표현의 자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는 공적 활동에서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4)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회분위기는 물론이고 법령과 관행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한 두 가지 흐름을 유추해 본다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령 법으로 수집할 의무가 부과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법이 위헌으로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흐름도 감지된다.

발명특허칼럼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와 일본의 장인정신



김준효 변호사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일본인 아카사키 이사무(나고야대 석좌교수), 일본인 아마노 히로시(나고야대 교수), 일본 출신의 미국인 나카무라 슈지(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 3 인이다. 이들은 청색 LED 발명에 성공했다. 이 중에서 나카무라 슈지는 자신이 직원으로 일했던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을 상대로 2001 년경에 청색 LED 발명에 대한 보상금소송을 제기했다가 8 억 4 천만엔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사건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다. 그는 니치아화학공업이 발명보상금으로 2 만엔을 지급한 데 대하여 분노하며 “과학기술자의 눈빛이 달라지게 하고 싶다” 라며 200 억엔을 청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미국과 일본에서 많이 배출된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된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역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인 우대 체계”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연구실을 중심으로 스승과 제자가 오랜 세월을 함께 연구하면서 서로의 연구 성과를 조직화 해내는 “장인정신”을 드는 것 같다.

나카무라 슈지는 일본과 미국 양국의 연구환경을 경험한 사람이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그는 청색 LED 발명을 완성한 후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학기술자여, 일본을 떠나라”라고 외치며 미국으로 갔다. 그는 과학기술인 우대 체계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일본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역시 일본의 장인정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초과학에 투자하였는데 그 기초는 장인정신이라 할 수 있다. 여태까지 일본의 투자가 사장되어 왔으나 이번 청색 LED 발명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기초과학이 실용화로 연결되어 일본은 고무되었고, 이로 인해 나카무라 슈지의 비판에도 무딘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 “한국은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 일본의 장인정신을 배울 것인가, 미국의 과학기술인 우대 체계를 이을 것인가?”

과학 분야 역량의 발전의 결과 노벨과학상 수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수상 자체 보다는 과학 분야 역량의 배양 자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위 질문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일본의 장인정신을 배울 것인가, 미국의 과학기술인 우대체계를 이을 것인가?”로 바꾸어 물어 본다.

그러나 양자는 이분법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장인정신은 과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정신 즉 내면적 기초이고, 과학기술인 우대체계는 과학연구의 외면적 토대라고 본다. 그래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정신의 밑바탕에 “장인정신”을 두면서 과학기술인 우대체계를 세우되 이러한 우대체계의 구체적 형태의 하나가 연구 결과에 대한 보상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장인정신을 기초로 하여 선후배, 제자, 동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리고 장인정신을 내면적 기초로 하여 연구에 몰두하는 한국 과학기술인들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는 외면적 토대를 갖추어 준다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그 기초에서부터 큰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법령정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문건영 변호사

국가가 보유하는 저작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들어 왔다. 그럴 때마다, 조심하셔야 한다며 국가의 저작물이라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저작물이든지 보호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반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2014년 7월 1일부터 바뀐 제도의 요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 저작권적 고려와는 별개의 고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도 여기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수히 많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모두가 자유이용의 대상은 아니다. 저작물 중에서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서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저작물에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공누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다만,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www.kogl.or.kr>)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 외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은 당연히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넓은 활용을 위해, 위와 같은 공공누리 표시를 한 것은 역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저작물과 별개로, '공공데이터'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자적 형태의 공공저작물도 포함되지만, 저작물이 아닌 것도 있다.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를 검색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변경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법률실무강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의 체크리스트



윤복남 변호사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하에서는 '특허권'으로 통칭함)을 등록하였는데 경쟁기업에서 이를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 이러한 제품의 생산, 판매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특허 출원이나 등록은 많이 해 보았으나 침해 금지 소송은 처음인 경우가 많다. 소송을 하려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간 수행해 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의 주요 체크리스트

- (1) 내 권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 (2) 상대방 침해 제품을 어떻게 특정할지
- (3) 상대방 침해 제품이 내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 (4) 가처분을 할지, 다른 수단을 선택할지

첫째, 내 권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검토한다. 즉, 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피고)이 주장할 수 있는 특허권 무효 항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한다. 내 특허는 출원 당시 이미 선행 기술을 검색했고, 특허청 심사과정에서도 한번 더 걸러서 등록이 되었다. 하지만 막상 특허 침해 소송에 돌입하면 상대방은 말 그대로 '기를 쓰고' 선행 기술을 검색하기 때문에 출원이나 심사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선출원 특허가 발견되거나, 혹은 공지기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침해 금지 소송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점검하기를 권한다. 소장이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의 무효 항변 단 한번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예도 있다.

둘째, 상대방이 제조·판매하는 침해 제품을 어떻게 특정할지 검토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 침해 제품이 현재 판매 중이지 않다면, 어떻게 침해를 입증하고 상대방 제품을 특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 제품이 판매 중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 모델명만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소송 종료 후 상대방이 해당 모델명만 바꾸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제품 모델명 이외에 상대방 제품에 대한 설명서나 사진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특허 청구항을 조금 변형하여 상대방 제품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침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말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이를 위해 법원 집행관이 상대방 침해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 침해 제품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면서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물건의 발명이 아닌, 방법발명의 경우에는 특히 침해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할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특허 청구항과 상대방의 침해 제품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상대방의 침해제품이 자신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입증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특허 청구항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상대방 침해 제품에 이러한 구성요소가 모두 구비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 출원 당시에는 조기 등록만을 위해 청구항을 적당히 작성하였다가 막상 침해가 발생할 경우 너무 권리범위가 느슨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구성요소의 용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애를 먹는 경우를 본다. 따라서 가치가 높은 발명일수록 청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소송에서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변리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일부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스스로 청구항을 작성했다가 청구항 기재상의 오류나 한계 때문에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소송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참 안타깝다.

넷째, 가처분을 할지, 다른 분쟁수단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통상적인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의 수단은 가처분 신청이다. 가처분은 짧은 기간 내에(물론 그래도 몇 개월은 소요된다) 상대방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므로 상당히 위력적이다. 그러나, 만연하게 가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 제품의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 역시 대응특허를 갖고 있어서 특허 대 특허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술 논쟁을 통해 상대방의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짧은 기간만 심리하는 가처분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특허권이 현재 사용 중이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을 권한다. 또한 과거의 침해는 통상 가처분보다 손해배상청구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례적으로 가처분을 선택하기 보다는 가처분의 실익을 분명하게

검토한 후 분쟁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추가 실무팁

-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담재판부 관할 활용
- (2) 변호사, 변리사, 현업 기술인의 협업
- (3) 특허심판 활용

기타 몇 가지 실무적인 팁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적재산권 관련 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은 전문적인 소송이므로 경험이 적은 재판부보다 전담재판부에서 판단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특별재판적 등을 검토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을 잘 활용할 것을 권한다.
- (2)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의 기술적 쟁점 입증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변리사, 연구원 등 현업 기술진 3자 사이의 협업이 중요하다. 아무리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라고 하여도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에서는 전문변리사 및 현업 기술진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을 높이려면 변호사에게 충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특허심판을 적극 활용하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송상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보다 권리범위 확인심판만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에 이르는 심판기간이 필요하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제품 생산, 판매를 중지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당한 경우, 무효심판으로 맞대응하거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방어하는 경우 심판이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